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모든 법 위반행위를 정부가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민간에서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적극적인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51조제4항, 제6항)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4. ~ 9. 14.) 예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로,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을 “사업자인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의 기준·절차·방법과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된 사건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u>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u>	제51조(포상금의 지급) ① ----- ----- ----- ----- -----. <u>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u> ----- <u>사업자</u> <u>인 경우는 -----</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포상금 지급기준은 1천만원의 한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삭 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의 기준·절차·방법과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432